

정화조 청소 재독촉 및 과태료부과 예고 안내문

문서번호 : 자원순환과 - 3322
 시 행 일 : 2017. 2. 20
 수 신 : 국제자산투자주식회사 귀하

1. 귀하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, 오수처리시설)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나,
2. 귀하(또는 세입자)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1차 이행안내와 2차 이행 촉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, **2017. 3. 24.까지 정화조를 청소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만약 위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용량별 차등적용) 처분을 받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**기간내 아래 청소대행 업체로 연락하여 청소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연락처

- 동구환경 : **633-6399**
- 동구정화 : **637-4173**

건물소재지 및 소유자(관리자)	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38-2 국제자산투자주식회사		
개인하수 처리시설	시설구분	시설규모	청소예정일자
	정화조	1.25㎡	2016.12.4

4. 또한 귀하 소유(관리)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**건물 신축·멸실, 소유주변경 및 1년 이상 건물이 비워져 있을 경우 등 변동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** 자원순환과 (440-4442 담당자 우현정)로 연락바랍니다.

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

